

보도시점 2024. 4. 25.(목) 13:00
4. 26.(금) 조간

배포 2024. 4. 24.(수) 16:00

농식품부,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41개 신규 개선 과제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과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③ 신산업 지원 강화(7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매년 말 → 익년 3월말, 3개월)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4.7월) 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마지막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가금농가 경영 안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 효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 방안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문지인 (044-201-1361)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동민 (044-201-1362)



<붙임>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 방안

2024. 4. 25.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순 서

I . 추진 경과 1

II .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2

※ 5개 분야 41개 과제

III . 향후 계획 12

〈참고〉 과제별 추진 일정 13

I. 추진 경과

◇ **그간 4차례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22.9.~)를 통해 85개 과제 선정·개선 추진, '24년 상반기 과제로 41건의 신규 개선 과제 발굴**

- (그간경과) 「농식품 규제혁신 T/F(22.6.~, 기조실장)」,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22.9.~)」 등을 통해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
 - * 제1차(22.9.14.), 제2차(23.2.27.), 제3차(23.4.28.), 제4차(23.10.13.)
-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장관 주재)에서 과제의 중요성 및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85개 과제* 확정·개선 추진 중
 - * 85개 중 63개는 개선 완료, 22개 과제는 T/F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 중
 - ※ 품목 관련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소그룹 간담회 등을 통해 新산업, 청년유입, 반려동물 등 농식품 전 영역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 ('24년 과제발굴) 국정과제, '24년 업무계획 상 주요 개선과제, 현장 의견수렴(24.3.21.~4.5.), 부서별 과제 선정회의 개최(24.4.3.~4.9.)
 - 민생·경제, 입지·진입, 新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98개)를 발굴하고, '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41개* 선정
 - * 담당 부서별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의 중요도 및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
- (과제확정)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상반기 핵심규제를 확정·개선하여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농식품산업 및 농촌경제 활성화 뒷받침
 -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품목 다양화, 펫푸드 표시기준 정비, 농어촌 민박제도 개선 등 5개 규제 분야별*로 41개 과제 확정
 - * ①민생·경제, ②진입·입지, ③신산업, ④청년·인력·고용, ⑤현장애로
 - 치즈 소분 판매 허용,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현행화 등 관계 부처 협조가 필요한 협업과제(9개)도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

Ⅱ.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전 체	①민생·경제	②진입·입지	③신산업	④청년·인력·고용	⑤현장애로
41건	9건	10건	7건	4건	11건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품목 다양화

- ▶ **(현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3.10월~'25.10)를 통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 중으로 **청과류, 양곡류, 축산물만** 거래 가능
- ▶ **(개선방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계획서」 변경 및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24.6월)
- ▶ **(기대효과)** 온라인도매시장 조기 활성화, 유통비용 절감 및 어가 수취가격 상승

②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

- ▶ **(현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3.10월~'25.10)를 통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 중으로 판매자 가입요건은 전년도 거래규모 **50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
- ▶ **(개선방안)** 거래규모 **50억원 이하** 판매자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참여가 가능하도록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24.6월)
- ▶ **(기대효과)** 온라인도매시장 신규 판매자의 진입장벽 완화

③ 치즈 소분 판매 허용 **식약처 협업**

- ▶ **(현황)** 「식품위생법」 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치즈는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이 가능하여 재포장 비용 등이 발생
- ▶ **(개선방안)** 숙성치즈(Curd) **소분 판매 허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4.10월)
- ▶ **(기대효과)** 국내 치즈시장 육성 및 제품 다양성 제고, 낙농가 판로 확대 등

④ 수의사 외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범위 확대

- ▶ **(현황)**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과대학생은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양축 농가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가능**
- ▶ **(개선방안)** 지도·감독 주체(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추가) 및 **봉사시설 범위(동물보호 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포함) 확대**(「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24.4월)
- ▶ **(기대효과)** 의료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동물의 건강 증진으로 동물복지 향상

⑤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진료대상 가축 범위 확대

- ▶ **(현황)** 출장 진료 전문 동물병원은 소·돼지 등 산업 규모가 큰 일부 동물을 대상(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
 - *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은 진료실·처치실·조제실 등을 갖추어야 하나 출장 진료 전문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 **(개선방안)** 출장 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대상 동물 범위(노새·당나귀·메추리·꿩·꿀벌 및 수생동물 추가) 확대(「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24.4월)
- ▶ **(기대효과)** 동물 질병 관리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제공

⑥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 확대

- ▶ **(현황)**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은 11종으로 한정
 - *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전혈구 검사비, X-ray 검사비
- ▶ **(개선방안)**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20종으로 확대(「수의사법 시행규칙」 등 제·개정, '24.6월)
 - * 개 코로나바이러스, 혈청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검사, CT, MRI 등 9종 추가
- ▶ **(기대효과)** 소비자 알권리 확보, 동물 진료비 투명성 강화 및 진료 선택권 제고

⑦ 농·축협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 축소

- ▶ **(현황)** 농·축협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목적으로 중앙회에 보험료를 납부
 - * 보험료 부과 대상에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포함
- ▶ **(개선방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제외(「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 '24.10월)
 - * 예금담보대출은 보험금 지급 시 차감되어 리스크가 없고 기금 안정성에도 영향이 없음
- ▶ **(기대효과)** 농·축협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기금적립률 상승

⑧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바우처카드 발급 요건 완화

- ▶ **(현황)**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동행하여 우유바우처 카드 발급
- ▶ **(개선방안)**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 보호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동거인 등으로 확대(「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시행지침」 개정, '24.12월)
- ▶ **(기대효과)**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인 저소득층 편의성 증진 및 현장 민원 해소

⑨ 원유검사 표준용액 관리 민간 이양

- ▶ **(현황)** 원유 검사 장비 표준화 용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집유 및 원유검사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조하여 각 시·도 및 유업체 등에 공급
- ▶ **(개선방안)** 표준용액 관리 업무 **민간 이양**(「집유 및 원유검사 표준화 지침」 개정, '24.11월)
- ▶ **(기대효과)** 원유 검사 관련 업무 효율성 증진 및 민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①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분양조건 완화 **산업부 협업**

- ▶ **(현황)** 글로벌식품기업존 내의 유보지역에 국내기업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 하였으나, **최소 분양면적 조건(1만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에 애로
- ▶ **(개선방안)** 글로벌식품기업존을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 없이 필지별(1천1백평~8천평)로 분양 허용**(「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개정, 분양 재공고 '24.5월)
- ▶ **(기대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활성화

② 농어촌 민박제도 요건 완화

- ▶ **(현황)** 농어촌민박은 '95년 도입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
- ▶ **(개선방안)** 민박 면적 **규모기준(현행 230㎡미만) 완화, 석식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24.10월)
- ▶ **(기대효과)**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의 품질 제고

③ 비농지 기반 수직농장 경영 농업경영정보등록기준 마련

- ▶ **(현황)** 수직농장 운영 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미비**로 관련 산업 활성화 한계
- ▶ **(개선방안)** 수직농장 정의, **최소 면적기준(바닥면적 165㎡ 이상) 등 수직농장 등록 기준 마련**(「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개정, '24.6월)
- ▶ **(기대효과)** 수직농장 산업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 등

④ 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 도입

- ▶ **(현황)** 자자체별 빈집을 개별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 곤란
- ▶ **(개선방안)** 농촌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하는 경우 건축법상 특례* 부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24.7월)
* 해당 빈집을 개축·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조경기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건축경계 거리 등 완화
- ▶ **(기대효과)** 구역단위 빈집 정비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축특례를 통해 농촌빈집 정비의 활성화

⑤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 도입 **국토부 협업**

- ▶ **(현황)** 농지에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농지법」상 농축산물생산시설*과 토지개량시설로 주거목적 제한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및 그 부속시설(관리사), 농막 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호)
- ▶ **(개선방안)** 농지에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여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농지법」 개정안 발의, '24.8월)
*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협의 추진 중
- ▶ **(기대효과)**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준비기간이나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촌 생활인구 증가 및 지방소멸 예방

⑥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완화

- ▶ **(현황)** 5인 미만 가족농은 1인 1표제 등 조합 운영방식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농업회사법인**으로 선택권 제한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 가능
** (합자회사, 합명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
- ▶ **(개선방안)** 가족농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요건 완화 (조합원 5인 이상→3인 이상)하는 특례 신설(「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발의, '24.9월)
- ▶ **(기대효과)** 가족농의 원활한 영농승계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체 육성

⑦ 농식품 펀드 창업기획자 참여 확대

- ▶ **(현황)** 「농식품투자조합법」상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농식품 펀드 운용사로 참여 불가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벤처투자 촉진법」 제2조)
- ▶ **(개선방안)**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 발의, '24.8월)
- ▶ **(기대효과)**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 간 경쟁 유도를 통한 펀드 운용 효율성·전문성 제고

⑧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요건 완화

- ▶ **(현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시 **1차 산업 영위*** 및 **지역산 농산물 사용 비중을 50% 이상** 사용 규정
* (운영 형태 요건)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 **(개선방안)** ①**1차 산업 없이 2차·3차산업 영위 허용**, ②**지역산 농산물 사용 비중 축소** 등 인증 자격요건 완화(「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 발의, '24.12월)
- ▶ **(기대효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⑨ 정부양곡도정공장 진입 장벽 완화

- ▶ **(현황)**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 대상자는 기존에 **정부와 가공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로 한정
* 3년 단위로 체결(현 계약기간은 '22.4월~'25.3월)로 새로운 계약대상자는 '25.3월에 선정
- ▶ **(개선방안)**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 대상 선정 시 **기존 가공도급계약체결자 요건 삭제**(「2025년 정부양곡도급계약체결요령」 개정, '24.12월)
- ▶ **(기대효과)** 정부양곡도정공장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기술개발 유도 등으로 가공품질 향상 등

⑩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직농장 입주 허용 **국토부·산업부 협업**

- ▶ **(현황)** 수직농장은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공장식 작물재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이 제조업 공장 등으로 제한된 **산업단지에는 입주 불가**
- ▶ **(개선방안)** 농지법 시행령 개정('24.7월) 후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에 따라 **수직농장 업체의 입주 허용 근거 마련**(「토지이용계획 및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개정, '25.1월)
- ▶ **(기대효과)** 농업과 식품외식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및 고품질 농산물 공급·가격 안정화 등

3 新산업 지원 강화(7건)

① 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 ▶ **(현황)** 새로운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기준 및 요건 등 미비**로 소비자(반려인) 알권리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
- ▶ **(개선방안)** 펫푸드 과장·허위표시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 구체화**(「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24.11월)
- ▶ **(기대효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 투명성 강화

② 국가식품클러스터 펫푸드업종 입주 허용 **산업부 협업**

- ▶ **(현황)**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사람이 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연관업체(그릇·용기, 포장재 제작 등) 등만 입주 가능, **동물용 사료제조업체는 입주 제외**
- ▶ **(개선방안)** 반려동물사료(펫푸드)제조업체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허용 근거 마련(「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개정, '25.1월)
- ▶ **(기대효과)** 펫푸드산업·연관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③ 그린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 **(현황)**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 확대, 정책수요 등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책 지원 제도 미비**
- ▶ **(개선방안)**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제 도입 등 **맞춤형 정책지원 기반 마련**(「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24.12월)
- ▶ **(기대효과)** 그린바이오 산업 집적화·지역단위 확산 및 효율적 육성정책 지원

④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설치 요건 완화

- ▶ **(현황)**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장비 지원 대상 축사시설에서 **비닐지붕 축사는 지원 제외**
- ▶ **(개선방안)** 비닐지붕 축사도 ICT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지침」 개정, '24.9월)
- ▶ **(기대효과)**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 확산 가속화

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현행화 **산업부 협업**

- ▶ **(현황)**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ICT 기자재 표준화 미적용으로 **비표준 장비 보급** 등 시설확장·유지보수 애로
- ▶ **(개선방안)** 스마트팜 ICT 기자재 기업이 제품을 **국가표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국가표준」 제정, '24.12월)
- ▶ **(기대효과)** 스마트팜 ICT 기자재 품질향상 및 호환성 확대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

⑥ 스마트농산업 사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기재부 협업**

- ▶ **(현황)** 농업회사법인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범위가 제한적***이며, ICT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품목 한정적**** 적용
 - * 스마트농산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법인이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 ** 스마트팜 생육 환경 감지·제어 센서류, 천·측창 개폐 구동기류, 계측정보 기반 복합환경제어기
- ▶ **(개선방안)** 농업회사법인 스마트팜 기자재·서비스 **생산, 컨설팅 허용** 및 **사후 환급대상 ICT 기자재 품목 확대**(「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 및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24.12월 /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 '25.2월)
- ▶ **(기대효과)**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제고

⑦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 **(현황)** 스마트팜 확산에도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기술 이해도는 낮은 편으로 전문교육을 통해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활용 촉진 필요
- ▶ **(개선방안)** ICT 분석·활용 및 교육·상담 역량 등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부문 국가 전문자격제 도입**(「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 '24.7월)
- ▶ **(기대효과)**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 및 농산업 고도화 촉진 인력 육성 제고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①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 ▶ **(현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3월말) 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미등록 시 선정 취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 **(개선방안)** 농번기 농지 확보가 어렵고, 농지 확보 후 농작물 경작 등 당해연도 내에 경영체 등록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연장**(「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4.11월)
* 농업분야 정책개선 관련 청년농 간담회('24.2.29)
- ▶ **(기대효과)** 청년농업인이 농지 등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② 스마트팜 실증단지 청년기업 우선입주 지원

- ▶ **(현황)**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별로 스마트팜 **실증단지 입주 기업 공모** 시 일반 기업과 청년기업 구분 없이 선정
- ▶ **(개선방안)**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 입주 공모 시 **청년기업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지침」 개정, '24.6월)
- ▶ **(기대효과)** 청년기업의 스마트팜 산업 참여 확대와 기술의 상품화를 통한 스마트팜 농가 지원 활성화

③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요건 개선

- ▶ **(현황)**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어업인 주택 외에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 가중
- ▶ **(개선방안)**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농지법 시행령」 개정, '24.7월)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660㎡이하 → 1,000㎡이하)
- ▶ **(기대효과)**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기여

④ '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고용부 협업**

- ▶ **(현황)**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하여 '24년 시범사업 운영 중
* (업종) 한식업, (지역) 특별·광역시 전체 및 8개 광역도 내 음식점 상위 시군 3개 지역 등
- ▶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 개선**(「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24.12월)
- ▶ **(기대효과)** 외식업계 인력난 완화 및 경영안정 기여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① **특별관리대상 농약 판매방식 개선**

- ▶ **(현황)** 특별관리대상 농약은 수출입 식물 검역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제조·수입업자가 판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
* 대부분 가스형태의 훈증제로 농진청 고시에 6개 품목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
**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농관원 등), 수출입식물방제업자,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등
- ▶ **(개선방안)**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저독성 농약은 제조·수입업자의 직접 유통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 '24.4월)
- ▶ **(기대효과)** 공급체계 개선으로 업자 간 협업을 통한 국내 농약의 안정적 공급

②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 ▶ **(현황)** 남은 음식물사료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등록 시 가열·건조·냉각 등 **불필요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 부담
- ▶ **(개선방안)** 수분 14% 이하로 가공이 완료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정선·분쇄 등)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 시 **가열·건조·냉각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 완화**(「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6월)
- ▶ **(기대효과)** 사료업계 부담 완화 및 남은 음식물사료의 생산·수출 확대

③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 ▶ **(현황)** 사료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3개월에 1회로 규정하고 있어 사료업계 검사비용 발생 등 부담으로 작용
- ▶ **(개선방안)** 사료의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 1회로 완화**(「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6월)
- ▶ **(기대효과)** 자가품질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④ 산란계 케이지 단수 제한 완화

- ▶ **(현황)** 산란계 사육 농가에 대해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
- ▶ **(개선방안)** 12단 이하*의 단수로 산란계 케이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축산법 시행령」 개정, '24.11월)
 - * 가축 방역 및 사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EU의 경우 케이지 폭만 최소 90cm로 규정하고 3~12단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
- ▶ **(기대효과)** 생산상 향상으로 안정적 축산물 공급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

⑤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 사육밀도 기준 완화

- ▶ **(현황)**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50㎡이하)는 시설이 협소하여 번식우가 낳은 송아지 판매 지연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초과로 과태료 처분 대상
 - * (번식우) 방사식 10㎡ / 계류식 5.0㎡, (송아지) 방사식 2.5㎡ / (계류식) 2.5㎡
- ▶ **(개선방안)** 한·육우 가축사육업 등록농가에 한하여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 시 미포함 대상을 현행 **3개월령 송아지에서 8개월령까지 확대**(「축산법 시행령」 개정, '24.11월)
- ▶ **(기대효과)** 영세농가 규제완화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

⑥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기관 지정 공고 규정 명확화

- ▶ **(현황)** 신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여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신규 진입을 제한 할 우려
- ▶ **(개선방안)**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관련 고시에 마련(「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 '24.9월)
 - * 인증기관 신규지정 수요, 최근 3년간 신규 지정현황, 인증기관 지정취소(반납) 현황 등
- ▶ **(기대효과)** 신규 인증기관 진입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방지

⑦ 농수산물자조금 참여대상 확대

- ▶ **(현황)** 농수산물 품목당 **한개의 자조금**을 조성 운영토록하고 있어 전국 단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수급조절에 애로
- ▶ **(개선방안)** 지역단위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자조금 조성 허용**(「농수산물자조금법」 개정, '24.11월)
- ▶ **(기대효과)** 지역자조금제 도입으로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⑧ 농업용 동력운반차 연속 운전 기준 완화

- ▶ (현황) 농업용 동력운반차 성능기준에 '1회 충전으로 3시간 이상, 25km 이상 연속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규정되어 농업인과 기업의 선택권 제한
- ▶ (개선방안)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연속운행시간(성능기준)을 '1회 충전으로 2시간 이상, 17km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준 완화(「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24.10월)
- ▶ (기대효과) 근거리 이동에 저렴한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원하는 농업인에게 선택의 다양성 제공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⑨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포함 **국토부 협업**

- ▶ (현황) 소형 지게차는 농산물 운반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관리되어 농업용 지게차 구입·활용 시 농업기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 (개선방안)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되도록 개선(「건설기계관리법」 개정, '24.12월)
* 농업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 ▶ (기대효과)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지게차에 대해 정기검사 등 규제완화 및 용자·보조, 취·등록세 면제 등 경제적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⑩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변경 등록 간소화

- ▶ (현황)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가 타 지자체로 소재지 변경 시, 기존 지자체에 등록 말소 후 이전한 지자체에 신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민원 불편 및 행정 혼선 유발
- ▶ (개선방안) 이전할 지자체에 방문해 변경 등록하면 말소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24.4월), 전산시스템 개선('24.9월)
- ▶ (기대효과)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관리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증진, 가축방역 강화 제고

⑪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 완화

- ▶ (현황) AI 발생 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m 내(관리지역) 전(全) 축종 살처분' 하고 있어 축산물 수급 영향 및 일부에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
- ▶ (개선방안)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로 위험도를 고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가능토록 개선(「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24.10월)
- ▶ (기대효과)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로 가금농가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Ⅲ. 향후 계획

- (개선이행) 소관 실·국을 중심으로 상반기 확정 과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과제카드 점검·관리(매월)
 -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조기 이행 추진
 -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실무협의를 거쳐 규제혁신추진단·규제심판(국조실), 경제규제혁신 TF(기재부) 등을 활용하여 개선
 - * 치즈 소분 판매 허용(식약처), 스마트팜 관련 제도 개선(국토부, 기재부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업종 허용(산업부), 외국인력 고용 개선(고용부) 등
- (과제 추가발굴) 기발굴 과제 중 중장기검토, 불수용 과제 등은 재검토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추가 과제 지속 발굴(계속)
 - 민간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개혁 심사·판정*을 통해 권고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매월)
 - *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활용
 - 반려동물산업 등 유망기술 분야는 전문가 현장포럼(KREI 협업)을 개최하여 주요 이슈 및 규제 착안 사항 등 발굴(격월)
 - 新산업 분야는 기초자료 구축,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과제 발굴 추진 병행

⇒ 추가 발굴 과제는 농식품규제개혁 TF 논의 후 선정하고, 하반기 규제혁신전략회의(9월, 잠정)를 통해 개선 과제 추가 확정·발표

참고 1

규제혁신 과제(41건) 현황 및 추진 일정(안)

번호	과제	일정	담당과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1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품목 다양화	'24.06월	유통정책과
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	'24.06월	유통정책과
3	치즈 소분 판매 허용 식약처 협업	'24.10월	축산경영과
4	수의사 외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범위 확대	'24.04월	반려산업동물의료팀
5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진료대상 가축 범위 확대	'24.04월	반려산업동물의료팀
6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 확대	'24.06월	반려산업동물의료팀
7	농축협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 축소	'24.10월	농업금융정책과
8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바우처카드 발급 요건 완화	'24.12월	축산경영과
9	원유검사 표준용액 관리 민간 이양	'24.11월	축산경영과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1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분양조건 완화 산업부 협업	'24.05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	농어촌 민박제도 요건 완화	'24.10월	농촌경제과
3	비농지 기반 수직농장 경영 농업경영정보등록기준 마련	'24.06월	스마트농업정책과
4	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 도입	'24.07월	농촌재생지원팀
5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 도입 국토부 협업	'24.08월	농지과
6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완화	'24.09월	청년농육성정책팀
7	농식품 펀드 창업기획자 참여 확대	'24.08월	농업금융정책과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요건 완화	'24.12월	농촌경제과
9	정부양곡도정공장 진입 장벽 완화	'24.12월	식량정책과
10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직농장 입주 허용 국토부·산업부 협업	'25.01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번호	과제	일정	담당과
----	----	----	-----

③ 新산업 지원 강화(7건)

1	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24.11월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	국가식품클러스터 펫푸드업종 입주 허용 산업부 협업	'25.01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3	그린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24.12월	그린바이오산업팀
4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설치 요건 완화	'24.09월	축 산 정 책 과
5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현행화 산업부 협업	'24.12월	스마트농업정책과
6	스마트농산업 사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기재부 협업	'25.02월	스마트농업정책과
7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24.07월	스마트농업정책과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1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24.11월	청년농육성정책팀
2	스마트팜 실증단지 청년기업 우선입주 지원	'24.06월	스마트농업정책과
3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요건 개선	'24.07월	농 지 과
4	'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고용부 협업	'24.12월	식품외식산업과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1	특별관리대상 농약 판매방식 개선	'24.04월	첨단기자재종자과
2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24.06월	축산환경자원과
3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24.06월	축산환경자원과
4	산란계 케이지 단수 제한 완화	'24.11월	축 산 정 책 과
5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 사육밀도 기준 완화	'24.11월	축 산 정 책 과
6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기관 지정 공고 규정 명확화	'24.09월	농축산위생품질팀
7	농수산자조금 참여대상 확대	'24.11월	유 통 정 책 과
8	농업용 동력운반차 연속 운전 기준 완화	'24.10월	첨단기자재종자과
9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포함 국토부 협업	'24.12월	첨단기자재종자과
10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변경 등록 간소화	'24.09월	A I 방 역 과
11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 완화	'24.10월	A I 방 역 과

참고 2

과제별 담당자

과제명	실국·담당과	담당 과장	담당자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1.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품목 다양화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강혜영 과장 044-201-2211	박성진 사무관 044-201-2217
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강혜영 과장 044-201-2211	박성진 사무관 044-201-2217
3. 치즈 소분 판매 허용 식약처 협업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044-201-2331	홍석구 사무관 044-201-2340
4. 수의사 외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범위 확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현우 과장 044-201-2651	김준걸 서기관 044-201-2652
5.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진료대상 가축 범위 확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현우 과장 044-201-2651	김준걸 서기관 044-201-2652
6.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 확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현우 과장 044-201-2651	김준걸 서기관 044-201-2652
7. 농·축협 보험료 부과 대상 항목 축소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	김동현 과장 044-201-1751	이동기 사무관 044-201-1754
8.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바우처카드 발급 요건 완화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044-201-2331	홍석구 사무관 044-201-2340
9. 원유검사 표준용액 관리 민간 이양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044-201-2331	홍석구 사무관 044-201-2340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1.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준 분양조건 완화 산업부 협업	식품산업정책관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김신재 과장 044-201-2181	정찬민 서기관 044-201-2187
2. 농어촌 민박제도 요건 완화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김정욱 과장 044-201-1581	이영은 사무관 044-201-1590
3. 비농지 기반 수직농장 경영 농업경영정보등록기준 마련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 044-201-2411	이정기 사무관 044-201-2419
4. 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 도입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김소형 과장 044-201-1541	류성훈 사무관 044-201-1542
5.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 도입 국토부 협업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이정석 과장 044-201-1731	전병규 서기관 044-201-1742
6.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완화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	남현수 과장 044-201-1531	왕희대 사무관 044-201-1537
7. 농식품 펀드 창업기획자 참여 확대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	김동현 과장 044-201-1751	김명관 사무관 044-201-1752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요건 완화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김정욱 과장 044-201-1581	이종희 사무관 044-201-1582
9. 정부양곡도정공장 진입 장벽 완화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변상문 과장 044-201-1810	이한병 서기관 044-201-1820
10.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직농장 입주 허용 국토부·산업부 협업	식품산업정책관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김신재 과장 044-201-2181	정찬민 서기관 044-201-2187

과제명	실국·담당과	담당 과장	담당자
③ 新산업 지원 강화(7건)			
1. 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현우 과장 044-201-2651	박찬우 사무관 044-201-2656
2. 국가식품클러스터 펫푸드 업종 입주 허용 산업부 협업	식품산업정책관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김신재 과장 044-201-2181	정찬민 서기관 044-201-2187
3. 그린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김기연 과장 044-201-2131	한상훈 사무관 044-201-2137
4.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설치 요건 완화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정경석 과장 044-201-2311	박광덕 사무관 044-201-2329
5.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현행화 산업부 협업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 044-201-2411	명바른 사무관 044-201-2425
6. 스마트농산업 사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기재부 협업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 044-201-2411	권태훈 서기관 044-201-2415
7.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 044-201-2411	명바른 사무관 044-201-2425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1.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	남현수 과장 044-201-1531	김태영 사무관 044-201-1595
2. 스마트팜 실증단지 청년기업 우선입주 지원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이정삼 과장 044-201-2411	이강권 사무관 044-201-2423
3.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요건 개선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이정석 과장 044-201-1731	이상진 사무관 044-201-1739
4. '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고용부 협업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	김재경 과장 044-201-2151	이혜주 사무관 044-201-2170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1. 특별관리대상 농약 판매방식 개선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첨단기자재종자과	문태섭 과장 044-201-1891	곽재은 사무관 044-201-1895
2.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축산정책관실 축산환경자원과	서준한 과장 044-201-2351	서주형 사무관 044-201-2359
3.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축산정책관실 축산환경자원과	서준한 과장 044-201-2351	서주형 사무관 044-201-2359
4. 산란계 케이지 단수 제한 완화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정경석 과장 044-201-2311	이상훈 서기관 044-201-2317
5. 한육우 사육업 등록농가 사육밀도 기준 완화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정경석 과장 044-201-2311	이상훈 서기관 044-201-2317
6.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기관 지정 공고 규정 명확화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강승극 과장 044-201-2971	안정은 사무관 044-201-2278
7. 농수산물조금 참여대상 확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강혜영 과장 044-201-2211	정수연 사무관 044-201-2219
8. 농업용 동력운반차 연속운전 기준 완화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첨단기자재종자과	문태섭 과장 044-201-1891	이현 사무관 044-201-1896
9.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포함 국토부 협업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첨단기자재종자과	문태섭 과장 044-201-1891	이현 사무관 044-201-1896
10.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변경 등록 간소화	방역정책국 SI방역과	김용상 과장 044-201-2551	이병용 사무관 044-201-2561
11.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 완화	방역정책국 SI방역과	김용상 과장 044-201-2551	김석재 사무관 044-201-2555